

사당명 사도

등록번호	A4-147	
	A4	147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세번째-

<정색토론외 자료집>
영역별 장애우복지 발전방향 2

“교육”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2층
전화: (02) 521-5364 전송: (02) 584-7701

강: 심건원

일시 : 1994. 11. 18 (금) 오후 2:00 ~ 5:00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제와 영역별 장애우복지의 발전방향 2

고
목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타
11.18.04	A4	1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새로운 정치문화, 사회문화를 열어갈 지방자치시대에 새롭게 태어나야 할 장애우복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와 장애우복지, 그리고 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문화'의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습니다. 장애우 그리고 참복지의 내일을 고민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1994. 9.28 (수) 오후 2:00~5:00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이상목(송파구의회 의원)
지방자치제와 각 영역별 장애우복지의 발전방향	의료	1994.10.21 (금) 오후 2:00~5:00	강세윤(전문의·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용익(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교육	1994.11.18 (금) 오후 2:00~5:00	윤점룡(전주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성무(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김주영(명혜학교 교사)
	사회 환경	1994.12 중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7주년 창립 심포지움 (장소미정)
	고용	1995. 1.20 (금)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조윤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전문학교 연구원)
	복지 서비스	1995. 2.24 (금) 오후 2:00~5:00	나동석(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광훈(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과장) 차용호(사회복지개혁모임회장·면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복지와 장애우복지 실현방향		1995. 3.17 (금) 오후 2:00 (장소미정)	감정기(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복목(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장) 송창석(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인(부천시의회정지기단 간사)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병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차례

발제 1 11

교육자치제와 장애인교육
윤점룡 (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발제 2 19

지방교육자치 제도와 특수교육 발전 방향
이석무 (서울특별시 교육청 장학관)

토론 27

지방자치 시대와 장애인 교육의 방향
김주영 (명혜학교 교사)

부록

- 1>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 3>특수교육 연차보고서(1994)

교육자치제와 장애인교육

윤점룡 (전주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1.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1949년 공포된 교육법에 처음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6·25전쟁으로 그 실시가 지연되었고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비로서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폐지되고 1964년부터 시·도 단위의 명목상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해 왔다. 1988년에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시·군·구 단위의 자치제는 실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1991년에 제정된 “지방 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의 광역 단위에서만 그 제도가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의결 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집행장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정수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며 교육위원회는 아직도 중앙의 지배 권력이나 교육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교육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할 우리 정부는 민주화, 지방화, 개방화, 정보화, 다양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교육자치는 지방자치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시되어야 할 분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지방 교육자치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 원고를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지적하고 난 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장애인 교육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는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실시되어야 한다는 지방 분권의 원리와 교육 행정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해야 한다는 자주성의 원리,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교육 정책을 심의·결정함을 의미하는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의 원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식견을 구비한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제도는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전문직 관리의 원리 등 네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이러한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난 9월에 '참교육 전국 학부모회'에서 박두규(전 남) 교육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첫째,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라면 기초 단위의 자치 활동부터 보장되어야 주민이 참여하기 쉬울텐데 기초 지방자치 단체는 완전히 배제하고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 자치 단체의 단위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 주체(교원, 학부모,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교육 위원의 선출 방식이 이중 간접 선거라는 점과 교육감을 교향 선출 방식으로 뽑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지방 분권이 형식적이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리할 사람인데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지침이 전적으로 교육부에 의해 마련되고 있어서 교육 내용 결정에 대한 자율권이 미약하다. 그리고 교육 재정 운용면을 보면 예산 배분 방식만 총액제로 바뀌었을 뿐 교육세를 영구세로 개편하면서 국세로 하였고 때문에 지방 교육 재원의 국고 의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셋째, 전문직 관리체제가 미흡하다.

교육감의 자격은 교육 경력 또는 교육 전문가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기준을 정했으나 부교육감은 단순히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하게 했으며 교육위원 선출은 15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하여 정수의 1/2이상 뽑도록 한 결과 정년 퇴임한

제5차 4931.

교육 경력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91년도의 첫 민선 교육위원의 평균 연령이 60세라는 고령자들의 모임이 되어 전문적 활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운영 내용을 보면 회기가 최장 60일 밖에 안되고 상임 분과 위원회 구성도 불가능하며 보좌관은 커녕 기초 의회에도 있는 전문위원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교육위원회가 지방 의회에 예속되어 있다.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에 예속되어 있다. 교위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와 예산 안이 시·도 의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밟게 되어 교위는 지방의회의 소위원회 수준으로 자리 매김을 당하고 있다.

2. 지방 교육자치제의 개선 방안

교육 자치 단위를 기초 단위까지 확대해야 하며 학교 단위 자치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교육 행정이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으려면 시·군·구 교육청에 서의 자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단위 학교의 자율을 실현하는 것이 지방 교육 자치의 최종 도달점이라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의 참여권과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행정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방식이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감 산하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교육감도 교육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교육공무원으로 제한하여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제5차 3.8% → 5%로 인상

다섯째,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 위주의 조세 체계가 지방세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감은 교육과정 편성권을 갖고 교위는 시·도의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III. 교육자치 시대의 장애인 교육

지방 교육자치 시대가 열리면 장애인의 교육이 지금까지처럼 획일화된 교육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시·도 별로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다 빠른 속도로 장애인 교육이 발전될 것이며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도 별로 제각기 다른 특수교육 형태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통합교육의 실현이 빠를 것이며 졸업 후의 취업 문제나 중등학교의 직업교육도 지금 보다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야 할 장애인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방 특수교육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특수교육진흥법 제 4조를 보면 시·도에 지방 특수교육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 3조에서는 지방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심사, 취학할 학교의 지정·배치, 재심 청구의 심사·결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그리고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교육자치제가 되면 이 심사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군·구와 같은 기초 단위까지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 모든 특수교육의 중심이 시·군·구 심사위원회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시·도 심사위원회는 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현행과 같이 시·도 심사위원회 수준에서 그쳐 버린다면 옛날 같이 형식적인 조직체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장애학생이 도청이 있는 수원시까지 가서 판별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초 단위인 시·군(구) 심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인근에 있는 장애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내의 장애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자문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군(구) 심사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그 동안 취학하지 못한 중증장애 학생이나 학교에 다녀도 능력에 알맞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증장애 학생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은 그들의 집 가까이에 있는 일반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해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예상보다 빨리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를 짓는 일보다 남아도는 일반학교의 교실을 활용하면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고 특수교육의 기본 원리인 통합교육에 부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 쉽다.

이렇게 일반학교 내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일들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본 제도에 들어서 있다. 미국에서는 4년 전부터 장애 학생의 92% 이상이 일반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수교육에 앞서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수학교의 문을 닫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일반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가벼운 장애학생들도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지 않고 원적학급으로 돌아가 그들의 능력에 알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학생수에 따라 특수교육 전담교사의 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특수교육 교사의 배치로 일반학급 내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능력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일반교사들도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기타사항: 특자는 → 일반학교 교사 1명 / 특수교사 1명 배치 (2명 1교사)

③ 장애 유아 조기교육의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 의무교육 범용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기교육이다. 조기교육만 잘시키면 많은 장애 유아들이 취학 연령이 되어 학교를 들어갈 때 대부분 일반학교로 진학해 버리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수교육비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을 절약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방교육 행정가들이나 학부모들이 잘 알고 있으며, 교육 행정가들의 이해가 부족한 시에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로 조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유치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 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 양성, 교육 시설·설비의 확충 등 조기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장애 유아를 치료하거나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치료전문 기관으로 양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 과정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유치원 과정 이전의 장애 유아 교육비가 문제가 되지만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 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로 방과후 학습

다행히도 유아 3세까지 보육해줘야

4.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과 개별화 교육 실현

교육자치제가 제대로 실시되면 교육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 체제의 하향식 전달방식은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와 학교단위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채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실현으로 학교운영이 민주화되어 교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관료주의적인 학교장 중심 운영 체제를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육 내용이 펼쳐질 것이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교육내용에까지 참여하므로서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질 높은 교육을 이룰려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서비스(특히, 치료교육)도 강화 될 것이다.

5. 직업교육의 강화와 취업률 고조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 타 시.도에 취업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지역내의 사업체에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관할 내의 특수학교에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특수학교에서도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직업 교육을 실시 하므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고, 산학 협동 체제의 구축으로 쓸모있는, 산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킴으로서 취업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그들의 생활도 윤택해 질 것으로 보인다.

6. 장애인 부모회의 강화

교육자치제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장애인과 그 부모 일 것이다.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 '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운영에도 직접 관여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부모들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부모단체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선거전에서도 무시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는말

앞의 글에서는 교육자치제가 되면 장애인 교육이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면만을 소개하였으나 모두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 교육의 책임 소재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서로 미룬다던가 지역별 수준차이로 오히려 열등감을 갖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획일화 되어있는 장애인 교육이 다양화되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각 시.도별로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장애인 교육이 펼쳐지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전반적인 장애인 교육의 수준이 향상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조한 장애 학생의 취학율도 높아지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알맞는 교육도 쉽게 이루어지리라 본다.

'95년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등 지방 정부 구성이 선거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서 지역 자치의 내용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 자치제에 관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

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자치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자치제의 운영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교육 자치제하에서의 학부모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자치제의 민주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 운동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을 확보·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교육 참여 문제가 90년대에 들어 전교조의 출현 및 학부모 운동 단체의 발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실질적으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 획득을 위한 투쟁을 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교육쪽에서는 '한국 장애인 부모회'가 있긴 하나 관련 단체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연대하여 학부모의 권리를 찾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장애인의 교육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에 기여함에 있다. 즉, 장애인도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가지고 비장애인과 함께 건강한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나 직업 및 고용, 사회환경, 그의 관련 서비스 등과 함께 장애인의 교육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글 16쪽의 2페이지에 16쪽과 17쪽의 내용이 들어 있다.

발제 2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특수교육 발전방향

이석무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특수교육 발전방향

이석무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1. 지방행정자치제의 행정구조와 기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91.3.8일 제정되어 같은달 26일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지방자치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온 까닭으로 교육부장관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행하여오던 학교의 설립·폐지의 승인과 조례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 제반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주게 되었다.

'91.8. 10일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가 발전되어 시행해 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가 실시된 것은 1952년 부터라고 알려져 있고, 그때 부터 올해까지는 약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의 역사는 결코 짧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까닭으로 지방자치가 제한되었던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교육행정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교육 행정기관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으로써 적어도 교육행정기관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으로써 적어도 교육자치의 제도적 기틀은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주민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행정 또는 교육자치의 민주적 운영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며, 지금의 교육자치제도와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새롭게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되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교육행정 사무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행정구조와 기능 및 특수교육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행정구조의 기본 내용

가. 현행교육자치제도는 교육·학예(이하 '교육'이라 함)에 관한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 (교육법 제 6조)하는 것을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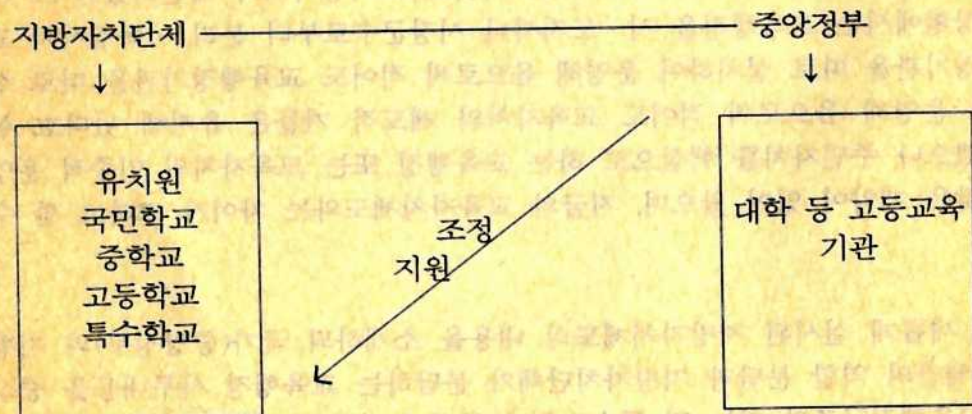
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수행하는 교육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 9조 2항 제5호의 가)는 유아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로 되어 있다.

-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헌법 제 31조 제 4항)하고 공정한 민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 14조)교육에 관한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지방자치법 제 112조 제 2항)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자치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 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제정(지방자치법 제 112조 제 2항)되게 되었으며,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조로 하면서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 제 3조를 두고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 제 25조를 두도록 하고 있다.
- 라. 시·군·구 단위에는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교육장(제 43조)과 교육행정자문위원회(동법 시행령 제 23조 및 시·도 교육규칙)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가. 역할분담의 체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사무를 분담하는 체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분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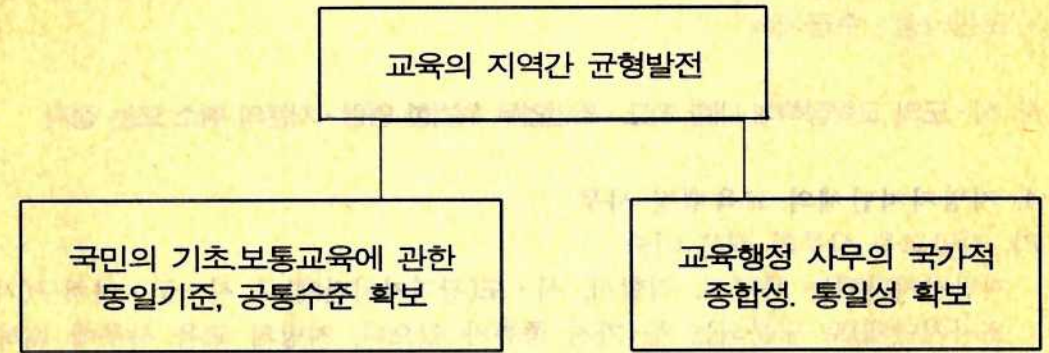
이러한 역할분담 체계는 교육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보완적·동반자적 관계가 중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초·보통교육(의무교육 등)에 관해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국민

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중앙정부의 행정기능과 사무

가. 기능

국가조직 전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조직의 일부이므로 각기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해 나가되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되어 독자적으로 교육행정을 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각각의 지역사회는 국가사회를 이루는 기초단위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교육발전은 국가의 발전에 연결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정기능을 할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복지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민적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 현대에 와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 나. 예를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학교 6학년까지의 교과과정 중 일부 과정을 생략한다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수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그 지역의 교육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교육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다. 중앙정부의 교육행정 사무

새로운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교육행정 사무의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국적·종합적 교육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중·장기 교육계획
- 장학 방향
- 대학·전문대학의 교육정책
- 실업고등학교 육성 계획

2) 전국적 기준의 통일 또는 조정업무

-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
- 학교시설 기준
- 교원 임용 기준

3) 시·도의 자원·능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지원
- 교원양성·수급계획

4) 시·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조업업무 위법한 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사무

가. 지방교육 사무의 배분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직할시, 시·도(광역자치단체)나 시·군·자치구(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나, 지방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상 이를 특별시, 직할시, 도(이하 '시·도'라 함)가 담당하여 처리할 사무로 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함)에는 이를 배분하고 있지 않다.

현행 제도가 지방의 교육사무를 시·도에 배분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 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도가 담당할 사무의 내용

- 행정결과가 여러지역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시·도단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한 사무
- 지역특성에 기초한 시·도단위의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사무
- 시·군·구의 독자적 처리가 부적당한 사무

5.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사무

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 수행하는 교육행정 사무는 학교교육의

경우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설치·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로서 그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교육자치법 제 27조)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사무의 내용

- 조례안의 작성
- 예산안의 작성
- 결산서의 작성
- 교육규칙의 제정
- 학교 기타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 학생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금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6. 시·군·구 단위의 교육청이 맡은 사무

-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시·도에서 예산을 총액으로 배정 받아 이를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무
- 관할 교육기관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II. 서울 특수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

1.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

- 가. 의무교육의 실현화
- 나.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의 개별화
- 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일반화

- 라. 특수교육 담당교원 및 지원체제의 전문화
- 마. 특수교육 여건의 개선 및 시설의 현대화

2. 특수교육 발전의 정책과제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완전 취학 의무·무상교육 실현

- 1) 지역별 공립특수학교 신설(소규모 학교를 지역적으로 분산 신설)
- 2)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가정에서의 교육기회 제공(순회교사제 도입)
- 3) 일반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병설특수학교 운영
- 4)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문직업교육 과정 설치 운영
- 5) 특수학교의 특수시설(요육, 직업) 및 편의시설 완비
- 6)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 7) 사립학교 여건을 국·공립 학교 수준으로 개선
- 8) 모든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아를 위한 편의시설 완비
- 9) 특수교육대상아에 대한 개별화교육 의무화

가) 학교단위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체제 구축

나) 교육과정 운영·자료의 개발·보급 확대

10) 우수교원 양성 및 교육복지 개선

가) 모든 일반 교직원 연수시에 특수교육 연수 실시

나) 특수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의 다양화

- 교육과정 연수

- 장애영역별 자율연수(6개의 장애영역)

다) 특수학교 교원의 업무부담 적정화

- 교과전담 교사 완전 배치

11)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가)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문 인력 보강

- 학교급별, 장애유형별 장학이 가능하도록 보강

나) 특수학교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12)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가) 일반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장애인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학교와의 상호교육적 교류기회의 제도화(교구, 설비 기준안 제정)

다) 특수교육을 위한 교구, 시설, 설비의 완비

토론발제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교육 방향

김주영 (명혜학교 교사)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교육의 방향

김주영 (명혜학교 교사)

I.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며

1. 지방자치 제도의 정의

지방자치란 국가의 정치 권력을 중앙 집권적인 전 국가 통제 체제에서 지역 단위의 분권적 자치 기구로 대폭 이양하거나 위임하여 지역 중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정치 제도이다. 지방자치 제도는 자치권과 주민, 관할 지역의 3대 요건을 갖춘 지역 단위들로 구성되며 행정부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에 속하는 지방 의회가 설치된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수반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러한 절차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제도는 민주주의 정치 이념에 가장 접근한 형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지향하는 바가 국민의 자유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policy decisions)하고 국민들의 기본 권리(basic right)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방자치 제도의 특성이 일치점을 이루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제도의 성공 여부는 중앙 정부가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2.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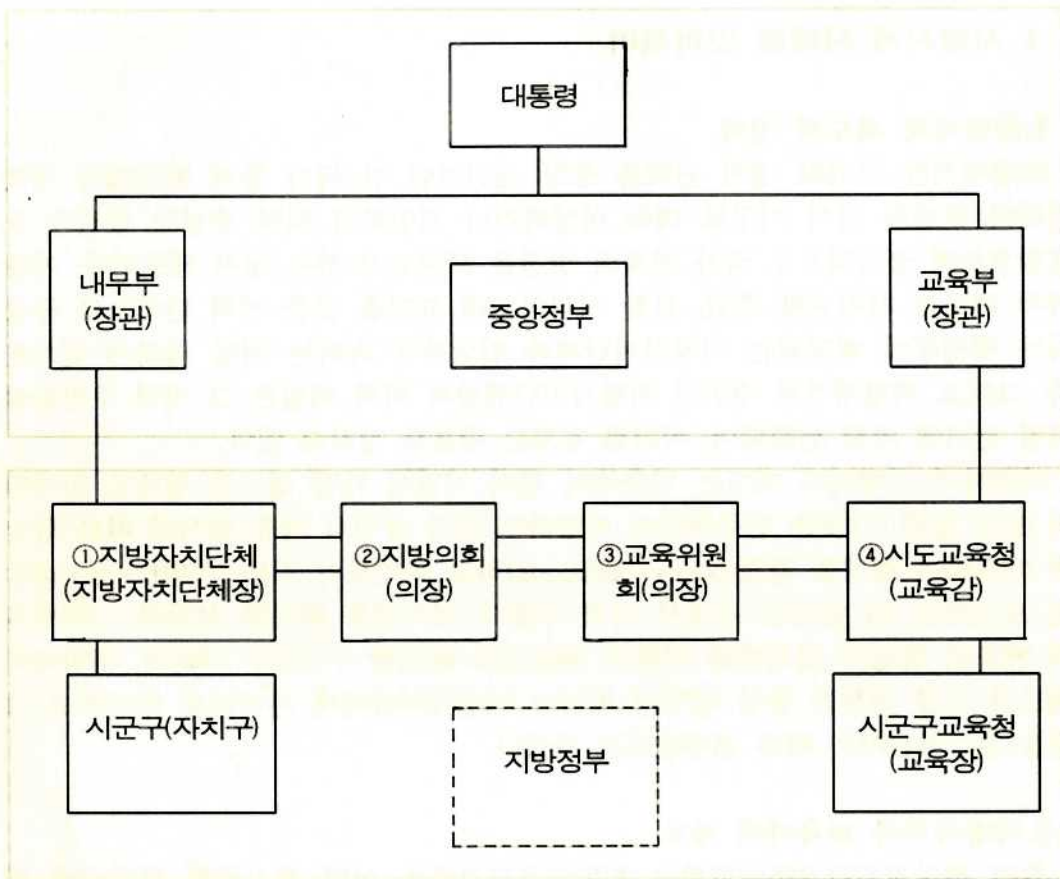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로부터 교육의 자치권을 더욱 확대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을 뽑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교육의 자치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현 구조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로 이원화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그것은 지방자치기구와, 같은 맥락의 지방교육자치기구가 함께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일관성, 자주성을 중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 정부의 사무 가운데 교육과 학예(체육, 문화, 예술 등)에 관한 부분을 위임하여 하나의 준 독립 자치 기구를 둔 것이다.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조직>



- ①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상 지방자치단체장)'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 ②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
- ③ '교육위원'은 지방 의회에서 선출. '교육위원회'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
- ④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3.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변천과 의의

우리나라는 198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91년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이미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각 시도별 지역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시대의 막을 연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지방 의회가 구성된 것은 이미 1952년의 일로 제헌 헌법에 의하여 1949년 7월 4일 법률 제 32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지방 의회의 구성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었다기보다는 집권 세력의 지방에서의 기반 확보 등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혼란만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한 채 1961년 5.16 군사 정권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다.

5.16 군사 정부는 지방 의회를 해산하고 지역 행정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통제를 위하여 같은 해 9월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국가가 임명하며,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결정해 오던 사항을 내무부 장관(서울특별시와 직할시)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제 4공화국 헌법은 남북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지방 의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은 완전히 사문화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고도, 1961년 파행적이거나 이루어져 왔던 짧은 기간을 끝으로 근 30년간 왜곡된 정치 상황을 겪어 오면서 이 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경험을 쌓지 못하였던 것이다.

4. 지방자치 제도와 예상되는 변화

지방자치 제도가 실현되면 무엇보다 국민과 정부의 거리가 가까워 질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익을 말하려 하여도 정작 그것을 들어 줄 정부가 너무 멀고 엄하여 개인적으로는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을 모아 이익 집단으로 말하려 하여도 전경들로 둘러쳐진 공권력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자기의 문제를 서울까지 올라와 허공에 외치지 않고 자기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에게 직접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요구는 현재보다 훨씬 잘 받아 들여지며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곧 실현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은 정부로부터 인격을 존중받고 시민으로서의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주체가 멀리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지방 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하면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어 전국 어디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앞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익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그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환경, 복지, 경제,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를 이끌어 온 기존 단체는 물론, 그동안 중앙집권제 하에서 주목받지 못하며 소외되고 억압되어 왔던 농민, 노동자, 여성,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계층들도 이익 단체로써 지역 사회에 당당한 권리 행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지방 의원이나 행정가들은 해당 지역 사회의 요구와 편의를 미리 미리 파악하여 정치, 교육,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II. 지방자치제도와 장애인 교육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역사는 길다. 지금까지 밝혀진 기록으로는 1445년(세종 27년)에 젊고 영리한 맹인(盲人) 10명을 선발하여 3일에 한 번씩 서운관(書雲觀)에 모이게 하여 5-6명의 훈도(訓導)로 하여금 점복 교육(占卜教育)을 받게 한 것이 효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서양에서 전해진 근대적 의미의 교육은 1894년 북감리교의 선교사이며 의사였던 홀(R.S.Hall, 1865-1951) 여사가 오봉래라는 맹소녀를 직접 지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와 정부 수립,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은 거의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70년대를 고비로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양적인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상은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면서 대대적인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동등한 기회의 교육(의무교육기회의 보장), 적절한 교육(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활성화), 최소 제한 환경의 교육(통합교육)과 같은 보다 질적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환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은 질적인 변화를 거듭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장애인 교육은 어떻게 탈바꿈해야 하는지 현재의 상황과 견주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인 교육의 현실

1) 수혜율이 낮다.

우리나라는 현재 취학연령에 있는 전체 장애인의 추정치가 30만명을 넘고 있으나 그 수혜율은 겨우 20%를 조금 웃돌 뿐이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국민학

교 중학교의 취학율조차도 각각 19.17%와 11.97%로 나타나 그동안 장애인 교육이 얼마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2) 조기교육이 정착되지 못하였다.

장애아동에게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발달 과정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더 많은 통합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조기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이 있다고는 하나 거의 사설이며, 이러한 시설은 숫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성과 지역적 편재, 과도한 교육비 등으로 인해 수혜율(1991년 현재 3.39%)이 전체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다.

3) 특수학급이 제 자리를 못잡고 있다.

70년대 말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난 특수학급은 92년 현재 3,248학급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과는 대조적으로 특수학급의 질적인 발전을 찾기는 힘들다. 무작위적으로 그 문제점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특수학급 대상자의 선정이 지극히 형식적인 판별에 머물고 있다. 아동의 학습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학지도자나 학교 운영자의 이해 정도가 다르며 담당 교사들 가운데 특수교육 비전공 교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 일로에 있어(92년-26.9%, 93년-34.3%, 94년-37.3%) 운영에 일관성이 없다. 담당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정해진 교육 과정이 없다. 상급학교로 오를 수록 학급의 수가 적어 통합의지에 역행하고 있다. 끝으로, 현재의 특수학급은 정신지체 일변도다.

4) 사립 특수학교가 어렵다.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체 70%에 이르고 있는 사립 특수학교이다. 그러나 특수교육기관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립 특수학교의 상황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재정 문제로 인한 시설 및 교육 환경 보전과 확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애초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비영리 시설인 사회 복지 기관에 대거 특수학교의 인가를 허용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다. 현재 사립 특수교육 기관의 재정 의존도는 약 94%에 이르며, 재단 전입금은 겨우 2.8%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전체 예산의 88% 정도가 인건비와 재산조성비로 쓰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재투자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5) 독립된 장애인 교육 행정 조직이 없다.

1994년 현재 교육부 내의 직제 개편에 따라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는 유아교육과로, 유아교육과 유아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담당관 1명과 담당 연구관, 연구사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있으며, 각 시도교육위원회와 각 교육구청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1인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특수교육 기관이 방대해지고 그 과정도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로 분화된 상황에서는 이들 인력만으로는 그 전문적인 업무를 관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각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구청의 담당 장학사는 이 분야에 지식이 부족하며 주 업무도 일반 장학에 치우쳐 있어 특수교육은 어디까지나 보조 업무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결국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장애인 교육 행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

2. 지방자치 제도와 장애인 교육의 방향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 장애인 교육도 여러가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조류는 분명 많은 시행착오와 과도기적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결국은 희망적인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힘과 땀이 쏟아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결집된 힘을 요구한다. 그 힘은 주민 선거나 지방 위원들의 의회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강력한 주체로써 장애인 교육의 발전에 튼튼한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 시대의 장애인 교육 발전은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줄기찬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그러한 노력을 전제로 장애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해 볼 것이다.

1) 학령기 장애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이 그 지역 학령기 장애인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 재정의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수립에도 필수적인 조치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장애인 인구수는 거의 외국의 통계치를 적용하였거나 일부 표집에 의한 추정치에 불과하여 그 신뢰성이 빈약했다. 따라서, 시도 단위나 시군구 단위로 학령기 장애인의 정확한 인구수를 조사하고 그 인구의 구성을 학령별, 장애별, 장애정도별로 분석하여 장애인 교육 여건 수립에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조치보다 시급하고 현명한 조치라 하겠다.

2) 전문 행정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백여개가 넘는 특수학교와 삼천여 개가 넘는 특수학급, 전국적인 하위 조직을 둔 특수교육 심사위원회, 국립 특수교육원, 의무교육의 실현 등으로 넓혀진 장애인 교육 행정을 교육부 보통교육국 유아교육과에서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명만이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장애인 교육을 일반 교육에 대해 차별하고 있으며, 능동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 행정을 담당할 부서 설치에 더 큰 힘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최소한 교육 자치의 행정부적인 시도 교육청에 장애인 교육 전담부서의 설치와 그 임무를 의회에서 정식 의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지역별로 일어난다면 두 명의 연구 인력으로 다른 부서의 보조 업무로만 여기고 있는 정부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며, 장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기교육의 완전한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조기교육의 정착이다. 앞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듯이 장애인의 조기교육은 통합화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의 교육은 그동안 특수교육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국가 예산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에 부딪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장애인의 조기교육을 의무화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협력한다면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조례의 신설로 지방 조기교육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교육과 더불어 장애인 조기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관장하고 현재와 같은 교육비의 부담과 교육기회의 부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역 학교의 여유 공간을 조기교육실로 이용하거나 사설 조기교육실의 설치 조건과 지도 감독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기업이나 사회 단체의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특수학급 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는 지금과는 달리 특수학급이 그 지역 장애인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은 지방 단위의 교육에 있어서는 규모가 크고 영역화된 거대 특수학교를 육성하는 것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다영역의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급을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수요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정신지체 일변도의 특수학급을 모든 영역으로 활성화시켜

어떤 장애를 가진 아동일지라도 그 지역 내의 특수학급에서 완전 교육이 가능하게 하였으면 한다. 또 법률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 특수학급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장애 정도를 경증 위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지양(止揚)하여, 다소 장애가 심하더라도 먼 곳에 있는 특수학교까지 가서 공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 충분한 교육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동에 심각한 불편이 따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엔 기숙제 특수학교나 순회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교육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이렇게 특수학급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면 특수학교는 자연히 그 수가 적어지고 현재와는 달리 고도로 전문화 되고, 그 형태도 여러 장애 영역을 함께 취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급의 관리체제를 완전히 개편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가들은 특수교육심사위원회와 함께 지역 내의 학령기 장애인을 사전에 유형별 정도별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각급학교의 적절한 특수학급 형태를 결정하며,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학급 운영 교사는 더욱 전문화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가산점을 바라는 일부 비 전공 교사들이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하며, 현재까지도 영역별 전공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 양성과정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5) 통합교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현되면 특수학급의 교육을 활성화함은 물론 학령기에 있는 단순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들이 정규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즉, 담당 교사의 이해와 교우들의 수용, 그리고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장애에 따른 물리적인 어려움 해결(점자화된 교재, 휠체어에 앉아 사용할 수 있는 책상 등) 등이 그것이다. 이 때 소속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다면 이들의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은 '더불어 살기'다. 통합의 정도는 항상 그 소속 집단의 인식 전환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관건은 학교 사회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돌이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은 나서서 지역 사회를 향한 더불어 살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부모 교육, 장애인 알리기, 학생들에 대한 순회 강연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도 역시 그 좋은 예가 되리라 믿는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그들의 세계에 계속 불박아 두는 것은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억압을 풀고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 아니라 교육의 몫이다. 학교에서의 통합화는 결국 사회에서의 통합을

실현하게 하는 시금석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의 난관이 있다 하여 통합교육의 의지와 새로운 계획의 추진, 기왕의 정책들을 유야무야 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방으로부터 통합교육 환경이 조성된다면 정부 주도의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와 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졸속 행정은 더이상 필요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I. 지방자치시대와 우리의 자세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 제도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검토하고, 그러한 정치 형태가 우리 사회에 미칠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장애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예상되는 어려움, 그리고 교육 자치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지극히 원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 시대는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결집된 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러한 힘을 모으지 못한다면 장애인 교육의 입지는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와 같은 강력한 복병에 의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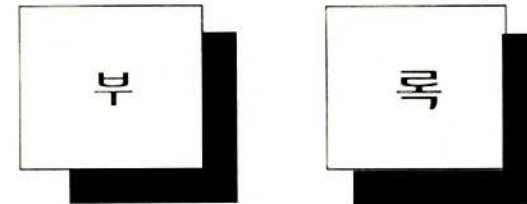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변해야 한다. 부모와 가족들은 더이상 장애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하지 말고 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기꺼이 나서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처해지는 여러가지 권리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자기 탓으로 돌려 버리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한다.

장애인관련단체들은 정부나 지방 행정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과 불만의 입장에 서려는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불편부당한 비판적 자세를 취해 장애인 제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뚜렷이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 사회의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시책을 연구하고 제안함으로써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단체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사람들의 결집된 힘이 모아진다면, 분명 다가올 지방자치 시대의 장애인 교육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인용문헌(쪽수 밝힘)

- 교육부, 「특수교육 백서」, 서울 : 교육부, 1993. pp.61-66.
- 김원웅, 「교육백서 II」, 서울 : 사회정책연구소, 1994. pp.41-99.
- 박경수, 「지자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도서출판해돋이, 1992, pp.16-18.
- 법제연구원, 「교육법전」, 서울 : 법제연구원, 1992. pp.58-65, 71-108.
- 한국특수교육협회, 「한국특수교육협회 삼십년사」, 서울 : 동 협회, 1994. p.40.
- 동아원색대백과사전(권 26), 서울 : 동아출판사, 1985. pp.21-22. “지방의회-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 김병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자료집」, 1, pp.11-17.
- 임안수, “한국맹인직업사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시각장애자교육연구」, 1-1, 1987. p.19, 125.
- “교육자치 3년, 어디까지 왔나”, 우리교육, 1994년 9월호, pp.38-63.
- 한국일보, 1994년 11월 9일자, 30면.



1. 특수교육진흥법 · 시행령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 시행령
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1994. 9)

특수교육진흥법

(1994. 1월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및 특수유치원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 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학교 기타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원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교육심사위원회) ①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이하 시·도라한다)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임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제5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조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교육에 관한 년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 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지정·배치요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취학편의 등) ①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차별의 금지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14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교육)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16조(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자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 치료 및 직업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치료교육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치료교육해당교원의 배치)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직업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21조(전공과의 설치) 고등교육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3조(특수교육교장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장학금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③ 특수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처의 1에 해당하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정, 배치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와 결정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벌 칙

제28조(부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과 그 배치를 방해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별되어 이 법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1994. 9월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① 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두는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중앙교육심의회규정에 의한 중앙교육심의회가 이를 관장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장·단기의 특수교육발전 계획
3.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4. 특수교육대상자의 심사
5. 교육부장관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는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심사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 할 학교의 지정·배치에 대한 심사
3. 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5.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 교사
3. 특수교육분야의 대학 교원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①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무상교육의 범위)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용 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위탁교육의 협의등) 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개시 10월전까지 교육 대상자의 수,교육연한등에 관하여 당해 특수교육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교육의 취소)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 1.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2.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3.기타 교육감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교육감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의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①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및 해당 학교장등 일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별표에 의한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 따라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학교의 지정·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를 지정한 후 이를 당해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안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운영실태 및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각급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직접 취학의 지원을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지원상황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1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이미 당해 학교 재정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에 소재한 특수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개별화교육 계획의 작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진단 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및 중복장애(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장애가 둘이상 복합된 장애를 말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6개학급 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2. 제 1호 외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12개 학급 이하인 때에는 2인을 배치하고, 12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제17조(직업담당 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직업담당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

야 한다.

1.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나. 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다.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

제18조 (전공과의 운영) ①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전공과를 두는 경우 그 수업연한은 장애의 중별 및 직종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전공과를 둘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전공과의 직종등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 (교과용 도서) ①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용 도서 중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용 점역교과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점역시설·설비를 갖춘 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20조 (재심청구)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교육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1995학년도에 실시할 위탁교육에 관한 협의는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별 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 (제9조 제2항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 라.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4. 지체부자유 특수교육 대상자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5.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 가. 지적·신체적 또는 지각적인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자.
 -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 다.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 라. 늘 불안해 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6.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조음장애·유창성장애·기호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7.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셈하기·말하기·읽기·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 비고 : 시력측정은 국제시력표에, 청력측정은 국제공업 규격품인 청력계에 의하며, 정신지체 정도의 진단을 위하여는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언어·학력검사 등을 실시하되,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일: 1991/03/08 공포번호: 법률제04347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 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①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 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교육위원의 정수)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 및 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수로 하되, 교육위원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도는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청의 수로 하되 제주도는 7인으로 한다.

제5조(교육위원의 선출) ①교육위원은 당해 시, 도의회에서 시, 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는 자이어야 한다.

③특별시 및 직할시 교육위원의 선출은 자치구의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자치구별로 1인씩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수의 교육위원은 자치구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선출한다.

④도교육위원의 선출은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교육청마다 1인씩 선출한다. 다만, 선출된 교육위원의 수가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수의 교육위원은 시, 군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선출한다.

⑤교육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교육위원의 선출은 교육위원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

⑥교육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에 따른 교육위원 정수의 조정) ①시, 도가 다른 시, 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시, 도의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 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수를 당해 시, 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②2개이상의 시, 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 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시, 도의 교육위원회로 통합되고, 종전의 모든 교육위원은 통합된 잔임기간중 짧은 편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수를 당해 시, 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③1개의 시, 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 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위원은 선출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으로 되어 분할된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각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 도의회에서 선출한다.

④하나의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교육청이 분할되어 2개이상 이 되거나, 2개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교육청이 통합되어 하나로 된 경우에는 다음 교육위원 선출때까지 교육위원 정수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시, 군 및 자치구가 다른 시, 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시, 군 및 자치구의 추천으로 선출된 교육위원은 종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편입된 시, 도의 교육위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교육위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재직교육위원수를 당해 시, 도의 교육위원 정수로 한다.

제7조(교육위원의 임기) ①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③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제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교육위원의 자격등)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9조(겸직등의 금지) ①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 도서관, 교원, 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교육위원의 의무) ①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교육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1조(교육위원의 사임 및 퇴직) ①교육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교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

1. 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직할시의 설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한다)
2. 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제12조(궐원교육위원의 선출) ①교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은 궐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 및 시.도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지를 받은 시.도의회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의회에 보고하고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5.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6.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7.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 청원의 수리와 처리
9.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의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④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의안의 이송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으로서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도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시.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중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의안중 조례안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⑥조례안의 재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15조(회의) ①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교육감이 소집한다.

②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④교육위원회의 개회, 휴회, 폐회, 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장, 부의장의 선출등) ①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7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9조(의사정족수) ①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교육감이 이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사국의 설치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